

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. 3. 22 선고 2022가단2984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연, 박환철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3. 22.

주 문

1.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2. 3. 1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위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2. 소송비용은
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C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(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533762호)을 제기하여 2017. 9. 21. ‘C는 원고에게 8,276,225원 및 그 중 6,999,073원에 대하여 2017. 5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판결을 선고받았다.

그런데 C의 아버지 D가 2022. 3. 12. 사망하여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도 위 지분 이외의 재산이 없던 상태에서 2022. 3. 18. 피고와 사이에 C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.

따라서 위 협의는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C에게 위 상속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 김진혜

별지